
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2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김정걸)

□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2021. 1. 12. 전부개정/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2조)

나. 회의(안 제4조)

다. 위원회의 직원(안 제5조)

라.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(안 제6조)

마. 수당 등(안 제7조)

바. 위원회의 활동 등 결과보고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(2022. 1. 26. ~ 2022. 2. 15.)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지역 실정에 맞는 인수위원회 조례를 마련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존속 기한 등을 규정하고,
-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
- 안 제8조에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백서 작성 및 결과 공개를 규정하여,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 신설(시행 2022. 1. 13.)로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’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,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
-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‘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·인수 매뉴얼’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 자치단체별로 인수위원회 규모나 활동기간에 편차가 있어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음
- 이에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예산지원 등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

-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(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당선인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-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인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.
-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·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
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
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
-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
 1. 시·도: 20명 이내
 2. 시·군 및 자치구: 15명 이내
- ⑥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⑦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인력·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